

對外貿易管理規定 改正에 따른 所要量制度 解說(II)

徐 鏞 源*

4. 自體所要量計算書 作成制度

나. 所要量自體管理企業制度

수출업체가 生産하는 物品은 附加價值稅法 제 35조, 所得稅法 제201조 제1항 및 法人稅法 제58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收率 및 原單位申告書”를 國稅청에 신고하게 된다. 生産收率을 計算하는 基準과 範圍는 對外貿易法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所要量제도상의 所要原材料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의 決定基準과는 다소 差異點은 有

지만 損耗率을 計算하는 개념은 같은 것이므로 生産收率 및 原單位申告書를 작성하고 있는 신고품목에 대하여는 實質的인 所要量の 確認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業體中에서 原材料의 自體管理能力이 높은 일정수준 이상의 企業에 대하여는 企業 스스로가 基準量을 自體策定하여 作成한 所要量計算書로서 所要量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企業을 『所要量自體管理企業』이라 한다.

이 제도의 요약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所要量自體管理企業制度 要約〉

輸出品	告示與否	原材料	所要量策定	適用時期	所要量確認者(發給者)	所要量確認書類
生産輸出申告品目	不問	生産收率申告對象原材料(主材料)	1年單位로 算出한 平均實際所要量	事業年度 終了後 3月이 經過한 때 輸出 또는 國內供給되는 物品	當該業體	所要量計算書
		生産收率 未申告對象原材料(副材料)	〃	〃	〃	〃
生産輸出未申告品目	告示	主材料 및 副材料	基準所要量	輸出免許日 國內供給日	當該業體	所要量計算書
	非告示	〃	實際所要量(單位所要量策定)	〃	非告示品目の 所要量 發給機關	所要量證明書

*關稅廳 還給課

(1) 所要量自體管理企業 指定資格要件

① 前年度 國稅廳 生産收率比較表에 登載된 業體

② 前年度 輸出通關額이 1千萬弗 以上인 業體

(2) 所要量策定基準

① 輸出品이 生産收率 申告品目일 경우에는 기준소요량 고시여부를 불문하고 1年單位로 산출한 平均實際所要量

② 輸出品이 生産收率 未申告品目으로서 告示品目일 경우에는 基準所要量

(3) 平均實際所要量 適用時期

① 당해기업의 事業年度 終了後 3月이 經過한 때

(4) 長 點

① 人力, 時間 및 費用節減으로 수출업체의 行政的 支援效果

㉠ 시·도 및 은행 등 발급기관에 왕복하는 時間 및 人力節減

㉡ 발급기관의 所要量策定 및 確認節次에 따른 번거로움 解消

㉢ 발급수수료 및 왕복차량비 등 費用節減

② 기술개발 및 공정변경 등을 신속반영 가능
기술개발 등에 따른 原材料 追加, 削除 및 所要量 變更의 신속반영 가능

③ 過多·過少還給發生 방지로 適正還給 維持
기준소요량제도의 단점인 업체간 기준량 차이에 따른 過多·過少還給防止 및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된 기준소요량에 대한 精算不必要

④ 業體의 不滿解消와 行政節次 減少

過多·過少還給防止를 위한 실제소요량조사 등 정산절차에 따른 업체의 不便과 不滿이 解消되고 追加還給 또는 追徵의 번거로운 行政節次가 減少된다.

⑤ 발급기관의 업무량 감소와 수출신장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처효과

㉦ 발급기관의 業務量을 減少시켜 줌으로써 다른 업체의 기타 所要量策定 및 確認에 正確을 기할 수 있는 時間과 人力確保 可能

㉧ 수출신장에 따른 所要量 발급업무량의 증가 추세에 대처하는 효과

(5) 短 點

① 業體責任 加重

信義誠實이 요구되는 制度이므로 所要量策定에 따른 業體責任負擔 發生

② 所要量策定 管理體制確保 부담

소요량의 自體策定이 可能하도록 企業内部的 시스템(전산 등) 構築

③ 策定된 所要量의 確認行政 發生

所要量策定の 正確性 與否를 確認하는 制度的 裝置 必要

다.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制度

基準所要量이 告示된 물품을 수출한 수출업체가 所要量證明書を 발급받는 행정절차로는 基準所要量에 따라 計算하여 소요량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래하는 外國換銀行의 長 또는 稅關長에게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게 되고, 발급기관은 告示에 따라 計算하여 發給하는 節次가 되는바, 이미 基準이 定하여진 내용을 계산발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므로 人力이나 時間을 낭비하게 되는 불편한 절차란 점에서 이를 省略하고 소요량계산서로 告示內容과 對照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利用度가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告示와 對照하게 되므로 아예 증명서를 發給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소요량의 確認은 製品의 性質이나 等級 등 여러 가지 要素에 따라 소요원재료의 종류 및 규격 등을 구분하여야 하고, 원재료의 混用比率이나 單位實量이 確認되어야 고시에 맞는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업체 스스로가 작성한 소요량계산서를 착오로 수정하게 되면 당초의 내용으로 작성한 還給申請內容까지도 再作成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品質面이나 標準化面에서 認定을 받는 企業이거나 일정한 要件을 갖추고 있어 원재료의 사후관리를 自律적으로 할 수 있는 企業 등은 製品이 安定性이 있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업체로 판단되므로 스스로 기준소요량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작성한 所要量計算書를 소요량증명서 대신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업체는 公營진흥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業體中에서 指定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指定된 業體를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이라 하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2)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의 取消要件

- ① 파산 등으로 자체발급이 불가능한 때
- ②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 1년이상 계속하여 소요량계산서 발급실적이 없는 경우

(3) 所要量策定基準

① 기준소요량

(4) 長 點

① 人力, 時間 및 費用節減으로 輸出業體의 行政的 支援 効果

㉠ 시·도 및 은행 등 발급기관에 왕복하는 時間 및 人力節減

㉡ 발급기관의 소요량계산을 확인하는 行政節次 省略

㉢ 발급수수료 및 왕복차량비 등 費用節減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制度 要約〉

輸出品	原材料	所要量策定	適用時期	所要量確認者 (發給者)	所要量 確認書類
고시 품목	주재료 및 부재료	기준소요량	수출면허일 국내 급일	당해업체	소요량계산서
비고시품목	주재료 및 부재료	실제소요량 (단위소요량 책정)	수출면허일 국내 급일	비고시소요량 발급기관	소요량증명서

(1)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 指定要件

① 公營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KS업체

② 公産품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 업체

③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세계일류화상품 생산 업체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2-15조에 의거 선정된 사후관리 자율관리기업 및 동자율관리기업

② 發給機關의 업무량 감소와 수출신장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처효과

㉠ 발급기관의 업무량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다른 업체의 소요량발급업무에 正確性을 기할 수 있는 時間과 人力確保 可能

㉡ 輸出伸張에 따른 소요량발급업무량 증가추세에 대처되는 効果

(5) 短 點

① 證明書制度에서 발생하는 基準所要量の 不適正

問題 常存

㉠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소요량에 대한 實際使用量の 調査節次와 精算節次問題 常存

㉡ 원재료의 규격, 혼용비율, 단위실량 등과 計算方法의 再確認問題

라. 所要量計算書의 策定基準別 比較

所要量自體管理企業과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은 所要量計算書를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으나, 所要量을 策定하는 방법에 있어서 所要量自體管理企業은 국제청 생산수율신고품목인 경우 고시품목 또는 비고시품목을 불문하고 1年單位로 산출한 平均實際所要量으로 策定하지만,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은 고시된 품목에 한하여 基準所要量 그대로 策定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만, 所要量自體管理企業일지라도 生産收率未申告品目으로서 告示品目일 경우에는 基準所要量을 策定基準으로 한다는 점과 未申告品目으로 非告示品目에 대하여는 비고시품목의 소요량 발급기관에서 所要量證明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은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과 같다.

5. 所要量證明書(計算書) 發給

가. 所要量證明書의 要件

관세 등 환급에 사용되는 所要量證明書는 다음과 같은 形式的 要件만을 審査하도록 환급특별법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관하여는 소요량증명서발급기관에서 발급에 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만약 착오발급으로 修正 또는 再發給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當該證明書와 관련한 기관을 確認하여 修正 또는 再發給된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환급신청, 상계원재료 소요량확인서 발급신청(이하 이절에서 “還給申請等”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 제출하는 所要量證明書는 다음 각 號의 要件을 具備하여야 한다.

(1) 소요량증명서 등의 발급규정에 따라 正當한 發給機關에서 발급된 것일 것(발급명과 발급기관장의 직인 또는 청인이 날인된 것).

(2) 수출면장 단위별로 발급되거나 2매 이상의 수출면장이 일괄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還給機關別로 발급된 것일 것.

(3) 소요량증명서 등의 발급내용에 訂正, 削除, 追加된 事項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이 訂正인을捺印한 것일 것. 다만, 발급기관의 장이 정정인을 누락하였으나 착오로 동 정정인의 날인을 누락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원재료의 규격란과 소요량란이 투명접착 테이프로 附着된 것일 것. 다만, 원재료의 규격과 소요량의 내용이 정정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착오로 투명 테이프의 부착을 누락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수출면장과 소요량증명서 등의 輸出內容이 일치한 것일 것. 다만, 수출면장의 규격표시에 갈음하여 “수출면장상의 규격과 동일함”이라고 주인한 것은 예외로 한다.

나. 所要量證明書(計算書) 發給時 留意事項

(1) 현행 還給特例法上으로 施行되고 있는 制度를 살펴보면 相計制度,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發給制度 및 還給制度로 크게 구분되고 있고, 還給制度를 細分하게 되면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定額還給方法인 少額輸出物品簡易定額制度, 業體別品目別定額制度 및 副材料定額制度和 실제 납부된 세액을 개별

적으로 확인하여 환급액을 정하는 방식인 個別還給制度(先還給 後精算制度 포함)가 있다.

이들 제도 중 個別還給制度는 제품생산에 사용된 原資材의 종류와 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는 所要量證明書(計算書)에 의하여서 환급될 金額이 決定되고 있는 제도이고, 相計制度 역시 이러한 所要量證明書에 의하여 輸出履行에 따른 相計處理가 되고 있다. 그러나, 定額還給方法으로 환급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들은 還給申請時에는 소요량증명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제도이지만, 그 定額金額을 告示하는 데는 個別還給形式의 資料에 의하여 定額을 결정하여 告示하게 되므로 還給制度 全般에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所要量證明書가 聯關되고 있다고 하겠다.

(2) 이와같이 還給될 金額決定은 所要量證明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겠으므로 환급에 사용되는 소요량증명서(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는 合理性和 正確性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要求되고 있으므로 發給上 留意하여야 할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所要量證明書 發給에 관한 具備書類에 의한 發給對象이 되는 物量確認의 正確性이다.

㉠ 『소요량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對象인가? 그 對象이 되는 物量은 얼마인가?』 하는 것은 신청시 제출되는 具備書類로서 檢討할 사항으로 소요량증명서 발급 근거서류인 수출면장 등의 關係書類에 의하여 審査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輸出免狀 등 내용이 變更된 경우에는 소요량발급대상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輸出免許後에 一部 또는 全部가 申告取下(訂正)되거나 輸出後 再輸入된 물품은 사실상 輸出이 이루어진 물품이 아니므로 소요량증명서가 발급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還給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非還給對象物品에 대하여도 소요량증명서를 발

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具備書類의 審査를 먼저 하여야 한다.

㉡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은 用途別로 1部씩만 發給되어야 하므로 重複發給되는 事例가 없어야 한다.

㉢ 該當되는 基準所要量告示를 適用하여야 한다.

輸出된 品目이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어 있는가? 告示된 內容이 그동안 改正되지 아니하였는가? 소요원재료로 보아 該當告示가 맞는가?』 하는 것을 檢討하여야 한다. 이때 수출물품의 상태뿐만 아니라 原材料의 狀態도 정확히 파악하여 該當告示 여부를 정하여야 하며, 고시를 適用하는 時點도 중요하므로 告示 改正前의 기준소요량을 適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所要되는 原材料의 種類와 規格 등의 正確한 確認이다.

㉤ 基準所要量告示上에도 수출품의 규격란과 원재료의 규격란에 소요량발급에 필요한 內容을 表示하도록 하여 소요원재료의 종류 및 규격이 결정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多樣한 內容은 부득이 包括적으로 告示되고 있어 細部的인 事項은 所要量證明書發給時에 事實確認問題로 되고 있다. 따라서 『소요되지 아니하는 원재료의 종류와 규격』으로 소요량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基準所要量告示에 의하여 單純計算方法으로 발급하는 제도이다.

즉, 基準所要量告示制度에서 그 소요되는 기준량과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 및 규격 등을 告示하는 데는 그동안에 수출업체들이 생산한 製品別單位所要量策定을 根據로 하여 平均的인 概念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業體別로는 차이가 있는 점과 告示된 이후에도 技術向上이나 施設

交替, 工程變更이 되고 있어 告示된 內容이 어느 시점에서 顯著하게 不合理한 것으로 된다는 점이 현행 고시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補完策으로 3年週期로 告示를 檢討하여 改正하고는 있으나 迅速한 反應이 어렵다. 그 이외의 問題點으로 製品과 原材料의 規格이 다양해지고 있어 그 規格 등을 고정화하여 표시할 수 없게 되므로 포괄적인 고시가 되고 있어 基準所要量告示에 의하여 발급되는 소요량증명서는 當該製品과 전혀 관계없이 잘못 발급될 수 있는 蓋然性이 많다는 점에서 告示에 의한 소요량증명서의 適正性이 문제되고 있다.

㉠ 還給에 使用되는 所要量證明書는 수출된 제품의 종류 및 규격에 맞는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 및 규격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소요되는 원재료의 種類 및 規格別 使用量과 比率 등이 구체적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還給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基準所要量告示에서도 그 내용을 具體化하여 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소요량을 살펴보면 現行 還給制度는 환급된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현저하게 不合理할 경우 이미 還給된 金額을 精算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還給에 使用되는 소요량증명서는 實際的인 所要量을 基本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非告示品目인 경우에는 비고시품목의 所要量證明書發給機關에서 소요량에 대한 구체적인 製造過程과 소요원재료의 種類, 規格 및 單位所要量을 調査, 確認하여 策定한 후 이에 따라 개별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所要된 原材料』가 『實際使用된 量』으로 발급되고 있는 소요량증명서이므로 발급상 착오나 오류가 없는 한 환급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환급대상이 되는 原材料의 범위는 환급제도

실시 이후 '84년도까지 수출품을 제조, 가공한 當該原材料의 概念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當該原材料를 確認하는 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85년 이후에는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를 “所要되는 原材料”의 개념으로 현실에 맞도록 改正하였으므로 現行 還給制度上에는 『輸出用原材料』를 『輸出物品 또는 이를 製造, 加工하는 데에 所要되는 原材料』로 定義하고 있다. 이때의 『所要되는 原材料』란 객관적으로 確認이 되는 範圍로 解析되고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에서 그 概念이 理解되어야 한다.

- ㉠ 原材料를 混合使用하여 製造, 輸出後 還給申請時, 사용원재료가 所要量告示 또는 證明에 不합하는 경우에는 그 所要되는 原材料의 關稅 등 相當額을 還給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출물품에 投入된 각종 原材料의 使用量 또는 比率이 객관적으로 確認된 경우에는 그 確認된 使用量 또는 比率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國產原材料와 輸入原材料를 혼합사용하여 제조 수출한 경우,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모두 所要量告示 또는 證明에 不합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還給한다. 다만, 原材料나 製品의 品質 등에 차이가 있어 同種同質의 物品이 아님이 客觀的으로 確認된 경우에는 확인된 바에 따라 구분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 所要量の 計算과 確認이 正確하여야 한다.

㉤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製品의 對象物量이 確認되고, 발급할 소요원재료의 種類와 規格 그리고 該當告示를 確認하고서도, 고시내용과 公證과정의 이해부족으로 소요량을 過多 또는 過少하게 발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輸出免狀 등 所要量發給 根據書類에 표시되고 있는 소요원재료의 單位所要量을 單位實量으로 알고 잘못 表示하거나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표현하여 소요량이 과다하게 발급되기도 하므로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시에 제품의 규격 등을 감

안할 때 “單位實量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하는 것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㉔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인 때에는 施設 및 工程의 變更 등으로 기준소요량이 실제사용량보다 顯著하게 差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사용량을 조사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사항들이다. 非告示品目인 때에도 단위소요량 책정시 처음 몇번의 工程別 原料使用량을 근거로 策定된 量을 그 이후에 계속하여 反復適用할 때에는 그동안의 技術向上, 工法變更 등 여러가지 變化要因으로 소요량이 당초 策定된 量과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㉕ 所要량을 計算하는 순서로는 製品의 物量으로부터 原材料의 使用량을 追迹하는 방법으로 소요량을 計算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輸出免狀上의 製品이나 所要原材料의 狀態와 單位를 이해하고 證明을 받고자 하는 所要原材料의 種類 및 規格과 數量計算方法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告示通則과 各 告示下段의 計算方法에 대한 理解를 먼저 한 후에 주어진 내용에 맞도록 計算하여야 한다.

㉖ 輸出되는 物品에 따라서 附屬品이 함께 輸出되거나 餘分의 部分品(spare part)을 포함하여 輸出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그 附屬品이나 餘分의 部分品은 原狀態로 輸出되는 것이 되므로 本體에 組立, 結合 등과 같이 附着되는 데 소모되는 損耗率이 發生될 수 없다는 점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㉗ 經濟的 價値가 있는 副産物이 發生하는 경우에는 副産物 發生內容을 表示하여 發給하여야 한다.

㉘ 現행 所要量制度上에는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附隨的으로 發生된 副産物까지도 그 原材料에 의하여 生成된 物品이 되므로

還給側面에서는 그 生成된 物品中 輸出되는 量에 該當되는 價値當該分만 輸出에 供한 部分이 된다는 뜻으로 輸出된 價値比率만큼만 還給額이 決定되도록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㉙ 고시품목의 경우에는 고시상에 미리 副産物이 發生되는 內容을 包含하여 告示되고 있으나 그 發生量이나 種類가 실제와 다르거나 기재되지 않은 副産物이 있을 수 있음은 基準所要量告示의 성격에서 문제점으로 설명된 바와 같다.

(3) 소요량증명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所要量計算書가 작성되는 경우도 그 計算書의 作成上 留意하여야 할 事項은 같다고 하겠으며,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는 業體는 所要량의 策定基準과 策定量의 合理性과 正確性에 대한 業務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더욱 留意하여야 한다.

다. 所要量證明書(計算書) 發給方法

所要量證明書의 發給方法에 대하여 對外貿易管理規定 제5-3-5조에서 그 方法을 정하고 있고, 그 樣式을 規格化하여 統一을 기하고 있으므로 그 方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所要量의 算出

① 輸出物品을 제조, 가공하는 데 所要되는 原材料의 量은 原材料 등의 基準所要量 또는 單位所要量에 外貨獲得用物品의 數量을 곱한 物量으로 表示하여 發給한다.

② 수출물품이 告示物品인 경우에는 當該 告示의 下段에 所要量計算方法이 明示되고 있으므로 그 產出方式을 根據로 하여 所要량을 算出하여야 한다.

(2) 規格 및 特性의 記載

① 外貨獲得用物品의 規格 및 特性과 所要原材料의 規格 및 特性을 明確하게 表示하여 發給한다(純度(%), 成分維持의 密度 및 굵기(번수),

商品名 등).

② 다만, 가격이 서로 비슷한 類似規格은 이를 類型化하여 表示할 수 있으나, 相異한 原材料規格으로 發給되지 않도록 하며, 類型化로 因하여 過多還給問題가 發生되지 않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③ 所要量證明書發給機關(告示機關)에서 規格表示를 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히 認定하는 경우에는 規格表示를 省略할 수 있다.

(3) 變造 등의 豫防措置

① 所要量證明書上 所要原材料의 單位, 規格 및 數量은 透明 데이프를 附着하여 變造를 豫防한다.

② 餘白에는 “斜線”을 긋거나 “以下餘白” 등으로 表示하여 追加插入을 豫防한다.

(4) 重複發給의 豫防措置

所要量證明書を 發給할 때에는 제출된 所要量證明書 發給을 필한 要旨를 記載, 捺印하여 같은 用途로 重複하여 發給받지 못하도록 措置한다.

(5) 加工段階別處分 發給可能

申請者의 要請이 있을 경우에는 所要되는 原材料를 基礎原材料와 中間原材料로 區分 表示하여 發給할 수 있다. 이때 기초원재료와 중간원재료가 重複하여 還給 등의 用途에 사용되지 않도록 中間原材料는 ()로 묶어서 表記하고, 段階別內容을 記錄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例示를 살펴보면

[參考 : 例示]

製品生産에 2段階 이상의 告示를 同時に 適用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基礎原材料와 中間原材料가 區分되는 경우를 말하며 당해업체는 基礎原材料를 購入하여 2段階 이상을 거쳐 輸出製品을 生産하는 때에는 還給받고자 하는 原材料는 基礎原材料에 대한 稅額이 된다.

(輸出品) 最終製品 P/C western shirts

中間原材料 : P/C blended spun yarn(실) 또는 P/C gingham Fabric(원단)

基礎原材料(還給對象) : “polyester staple Fiber”와 “Raw Cotton”(섬유)

6. 所要量證明書 發給錯誤 事例類型

所要量證明書란 수출 등 외화획득용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所要되는 原材料의 品名, 規格 및 數量을 計算하여 確認한 證明書を 말한다.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發給根據書類에 의하여 所要量證明書を 作成하게 된다. 이때 소요량증명서가 잘못 발급되는 경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申請書의 作成過程에서 여러 형태의 誤謬가 發生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수출면장 등 발급근거서류 자체에서 所要原材料의 表示錯誤 또는 單位實量 등의 過多表示로 인하여 過多所要量이 發給되는 경우도 있다.

電算化가 되어 있는 企業中에는 製品과 所要原材料를 코드化하여 電算出力에 의하는 방법으로 所要量證明申請書を 作成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電算活用은 손쉽게 處理될 수 있는 편리한 점과 正確性의 長點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製品의 特性 및 規格別 코드化 未洽, 原材料 規格別 코드化 未洽, 對替되거나 汎用性이 있는 原材料品名 및 規格의 電算處理錯誤, 基準所要量 變更에 대한 反映 漏落, 電算機器의 에러 등 여러가지 原因으로 所要量證明書 作成에 誤謬가 發生될 수 있음에도 전산처리를 信賴하는 習慣과 전산용지의 判讀이 쉽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아직도 대부분의 業體는 人力에 의한 手作業으로 소요량증명서를 作成하고 있으며, 이러한 業體는 所要量證明書 作業에 電算化開發을 못하고 있거나, 製品 및

原材料가 隨時로 變化하는 등 電算化가 不適合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이다.

소요량증명서는 생산공정관리와 관계가 없는 貿易을 擔當하는 部署에서 所要량을 계산하여 證明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이다.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所要되지 아니하는 전혀 다른 原材料의 規格으로 所要량을 作成하게 되는 오류가 생기기도 하며, 基準所要 量告示의 理解不足과 計算方法의 소홀 등으로 所要량이 전혀 다르게 작성되기도 한다.

所要量證明書の 用途가 대부분 還給을 받기 위한 目的에 있으므로 단순히 수입면장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 등의 納付事實關 係書類와 所要량증명서를 時差에 맞게 連結시키 는 데 급급하여 所要량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형태로 발급되거나, 심지어 이를 一 致시킬 目的으로 輸出明細의 內容까지 變造하는 事例까지 발생되고 있다.

所要량증명서의 發給錯誤의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類型別 區分

- (1) 申請具備書類의 檢討疏忽
 - ① 輸出免狀內容의 變造
 - ② 發給對象物量の 確認錯誤
 - ③ 非還給對象
- (2) 基準所要量告示 適用錯誤
 - ① 告示品目を 實查所要量으로 發給
 - ② 改正前 基準所要量告示 適用
 - ③ 相異한 基準所要量告示 適用
 - ④ 當該 原材料와 다른 基準量 適用
- (3) 所要되는 原材料의 種類 및 規格 등 檢討疏忽
 - ① 輸出免狀上 內容과 다르게 發給
 - ② 所要되지 아니한 原材料의 種類 및 規格으 로 發給

(4) 所要量計算方法 및 確認錯誤

- ① 單位實量の 過多表現 및 確認疏忽
- ② 單位所要量 過多策定
- ③ 所要量 重複計算
- ④ 半製品을 完製品으로 計算發給
- ⑤ 숫자判讀의 錯誤
- ⑥ 輸出品名 判讀錯誤
- ⑦ 輸出免狀上 所要原材料 種類記載 錯誤
- ⑧ 純度計算 漏落
- ⑨ 單位換算 錯誤
- ⑩ 混合比率計算 錯誤
- ⑪ 原狀態 輸出品名の 所要量計算 錯誤
- ⑫ 所要量計算方法 등 錯誤
- ⑬ 副產物發生量の 表示漏落

나. 事例

(1) 發給對象物量の 確認錯誤

① 輸出된 物品 중 一部數量이 再輸入됨으로써 재수입시에 당초 수출된 物品을 再輸入한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根據書類로서 당초 輸出免狀을 提示하여 關稅法 제34조에 의하여 전액 再輸入 免稅惠澤을 받은 경우에 대한 착오사례로서 殘餘輸出量을 還給받기 위하여 所要量證明書の 發給申請時에 再輸入된 數量을 포함한 當初 輸出 量으로 計算 申請한 것을 그대로 發給받은 事例

② 輸出免許된 이후에 그 수출물량 중 一部數 량이 申告取下되는 경우에는 수출면장상에 신고 취하내용이 記載되며 申告取下承認書を 발급· 교부한다. 이러한 때의 所要量發給對象物量에 신고취하된 數量은 포함될 수 없음이 당연하나 이를 當初 輸出物量으로 所要량을 計算한 事例

(2) 非還給對象에 대한 所要量證明書 發給

還給對象이 되는 輸出 등은 환급특례법 제2조 제2항 및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規定 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

無換輸出免狀이나 수입시 再輸出條件附加 免稅 받은 物品의 再輸出免狀 등은 非還給對象이 되므로 所要量證明書가 발급될 수 없다.

輸出物品이 瑕疵가 있어 反送되어온 경우로서 이를 다시 修理하여 再輸出할 條件으로 免稅(담보제공)받은 때는 재수출 후에 재수출면장으로 수출이행 사후관리(담보해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재수출면장으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아 免稅와 還給의 이중혜택을 받은 事例가 있다.

(3) 相異한 基準所要量告示 適用

① Synthetic Leather와 Natural Leather를 혼용하여 製造되는 『Golf glove』의 基準所要量告示는 C-P-1350-1호에 해당되며 소요원자재 중에서 Natural Leather의 基準量은 1.39이다.

그러나, 해당고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위 고시품목을 Natural Leather만으로 제조되는 Glof glove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는 고시인 C-L-1211호로 잘못 適用하여 소요원자재인 Natural Lea-

ther의 基準量을 1.4560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고, 심지어 Natural Leather를 『소동물피』(Sheep, Lamb, Kid, Goat, Deer)의 基準量인 1.5049로 더 많은 양을 적용한 事例

② 수출제품이 성형되거나 사출 및 압출된 樹脂類製品인 경우에는 用途와 種類에 따라 基準所要量告示가 구분되고 있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기준소요량고시를 適用한 事例(별표 고시 참조)

(4) 當該原材料와 다른 基準量 適用等

製品을 生産하는 工程段階로 보는 所要原材料는 제품의 前段階인 원재료상태로부터 1段階工程에서 製品이 生産되기도 하고 제품의 前·前段階인 原材料의 상태로부터 2段階工程을 거쳐 製品이 生産되기도 한다. 따라서, 製品工程의 段階에 따라 발급받고자 하는 소요원재료의 상태가 결정되게 된다.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한 소요원재료의 種類 및 規格과 所要된 量을 計算하는 데는 告示下段에 명시된 所要量計算方法과 告示內容을 理解한 후 合當한 計算方法을 택하여야 한다.

① 기준소요량고시 C-R-1531호에 해당하는 『신발류』에는 밑창부분에서 press board 부분과 in sole 부분 그리고 middle sole 부분과 out sole 부분으로 각각 구분되고 있고 각 sole 부분은 완성품 상태에서 신발의 upper 부분과 接着하게

基準告示	製品類	樹脂基準量 (수지중량에서)
C-P-1334	사출성형된 Plastic 제품	(有色) 1.0214 (透明) 1.0314
C-P-1334-1	P.V.C 사출 제품	0.70423
C-P-1334-2	자동차용 사출성형 제품	1.062 (無色) 1.0766
C-P-1335	냉장고용 압출성형 제품	(Door) 1.0479 (其他) 0.974
C-P-1342	전자제품용(Plastic Carbinet)	1.0206
C-P-1342-1	사출성형된 전자 제품용 部分品	1.0542
C-P-1361	압출성형된 Plastic 제품	(透明) 1.01 (有色) 1.00
C-P-2303	발포 성형된 전자 제품용 部分品 EPS=Expanded Polyethylene Resin	1.0261

신발前, 前段階	신발 前段階 完成品	신발의 基準量
press board(sheet)		단위실량×1.128
sheet for in sole		단위실량×1.8225
sheet for minddle sole	in sole	단위실량×1.005
	middle sole	단위실량×1.8379
	out sole	단위실량×1.005

* out sole의 前段階는 告示 C-R-1532, 1532-1, 1532-2, 1540, 1540-1을 參照하여 所要量計算.

된다. 그러나 sole이 완성품상태 이전에는 sheet상태를 切斷하거나, 몰드로 찍어내어서 완성품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므로 이때에는 所要原材料는 전단계인 sheet상태로 發給받기도 한다. 이와같이 고시상에도 그 段階에 따라 구분되어 基準量이 정하여지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原材料狀態의 基準量을 選擇하여 適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press board sheet는 기준량이 1.128인 것을 sheet for in sole 기준량인 1.8225로 계산하거나 middle sole의 기준량이 1.005인 것을 sheet for middle sole 기준량인 1.8379로 계산한 事例가 있다.

② 기준소요량고시 C-L-1210호에 해당하는 『혁제의류』에는 겉감부분(Shell Cloth)과 안감부분(Lining Cloth), 그리고 겉감과 안감 사이에 들어가는 부직포인 심지부분(interlining)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損耗率이 다르게 되므로 告示上에도 구분하여 告示하고 있다. 고시상에 심지에 사용되는 부직포는 그 기준량이 1.03임에도 interlining 기준량인 1.07로 계산한 事例

③ 수출면장상에서 소요되는 원재료의 規格이 表示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規格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제품 생산에 사용된 사양서 또는 부분품 명세서 등 相關자료로 소요된 원재료의 規格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確認하지 아니하여 所要될 수 없는 다른 規格의 원재료로 소요량증명서가 發給된 다음 事例가 있어 이를 열거해 본다.

① 原綿은 產地와 等級에 따라 低級으로부터 高級의 면사 規格까지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生産된다. 그러나 수출된 면사의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原綿의 等級(規格)으로 소요량증명서가 發給된 事例

㉠ 『Monitor 또는 PCB Ass'y』의 製造時에 使用된 IC, Tk, Resister, Diode, Condenser는 제품의 規格에 따라 規格별로 單位實量이 다르다. 이는 規格에 따라 機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품별 單位실량을 사실과 다르게 계산하고 원재료의 規格도 구분치 않고 發給한 事例

㉡ 『Tire』제조에 使用된 Nylon tire cord의 規格이 1260데니아인 것을 840데니아로 發給한 事例

④ 所要量計算方法 및 確認錯誤

기준소요량이 告示된 品目에 대한 소요원자재의 所要量計算方法을 크게 구분하면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화공약품류 등은 製品形成過程을 보면 대부분 여러 재료를 混合作用시켜 化學적 변화를 거치는 製品이므로 제품생산시에 사용된 원재료별 투입량의 平均으로 하여 이를 기준량으로 告示하게 되는 形態가 있고,

(基準量=原材料別 平均投入量)

둘째, 기계, 금속, 전자제품 등과 같이 주로 물리적으로 조합되거나 또는 조립되는 방법으로 생산되는 製品이거나, 의류 등과 같이 規格과 모양이 多樣하여 規格에 관계없이 平均損耗率을 산출하고 제품의 원재료별 單位實量(부분별중량 또는 깃수 등)에 平均損耗率을 합한 양으로 基準量을 산출하여 告示하게 되는 형태가 있다.

(基準量=單位實量+平均損耗率=1+平均損耗率)

따라서, 소요량은 수출량 또는 수출물품의 원재료별 單位實量에 의하여 決定되게 되므로 수출면장상에 원재료별 單位실량의 表現이 事實과 一致되기를 要求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한 수출신고시에 필수규격으로 표시된 원

재료의 單位實量에 대하여도 제품의 檢査過程에서 確認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외에 수출면장상 單位實量이 過多하게 表現되는 事例는 單位實量을 表示하는 과정에서 단위실량보다 크게 되는 pattern을 基準하거나 損耗量이 포함된 『單位所要量』을 『單位實量』인 것으로 기재함에 따라 생기는 事例도 있다.

⑤ 純度計算 漏落

基準所要量告示 通則 제8조에서 『원자재 및 수출품의 순도와 원자재의 Solid Content 등이 고시상의 그것과 상이한 경우일 때는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 비례환산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純도가 告示上과 다른 경우에도 소요량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되 比例換算토록 하였고, 각 告示에서도 『××% 기준』으로 表示하여 그 基準狀態에 맞추어 基準量을 計算하도록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화공약품류, 합금속류 등에 주로 많으며 이러한 때에는 소요량계산서에 比例換算을 漏落하는 事例가 없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기준소요량고시상에 수출품의 규격 또는 원재료의 규격에 『××% 기준』으로 하여 정한 순도와 발급받고자 하는 순도가 다른 경우에 比例換算하는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

例

* 告示 - [輸出品規格 100% 基準
 [原材料規格 98% 基準]

* 所要原材料의 輸出品 - [輸出된 物品規格 95%
 [使用原材料의 規格 90%]

(比例換算方法)

$$\begin{aligned} \text{輸出量} &\times \frac{\text{輸出된 物品 95\%}}{\text{告示上的 輸出品基準 100\%}} \\ &\times \frac{\text{告示上的 原材料基準 98\%}}{\text{使用原材料 90\%}} \end{aligned}$$

(5) 混合比率計算 錯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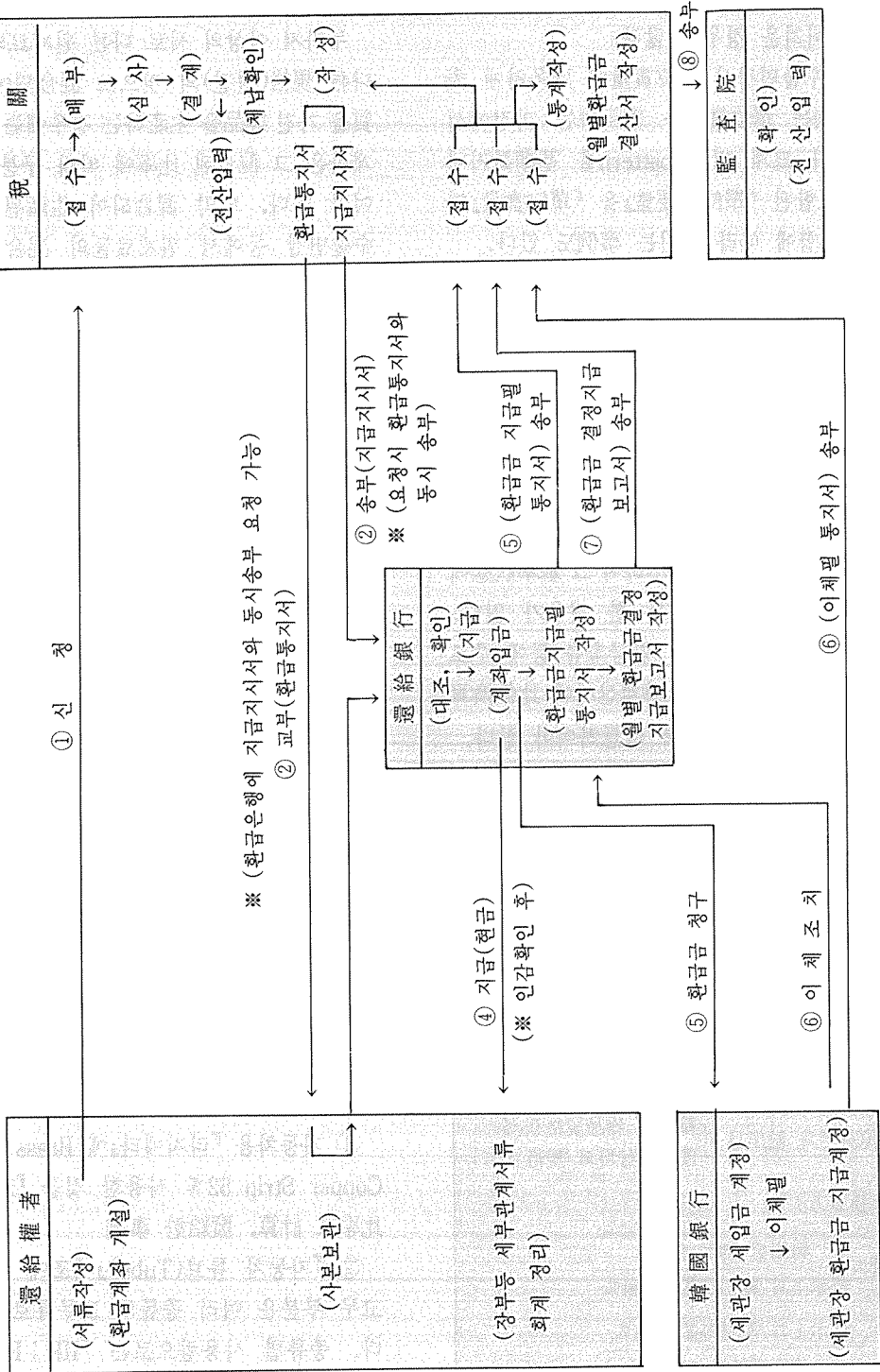
두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재료의 種類 또는 다른 規格(성질)의 것으로 混合되어 一定한 性質을 가진 製品을 生産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량의 계산은 그 混合된 比率에 따라 구분해서 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混合되어 生産된 物品임에도 수출면장 등에서 원재료들의 混合되는 內容이 記載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카다로그 또는 제품사양서 등 關聯資料에 의하여 확인하게 된다. 특히, 一定한 比率로 원재료들이 配合 또는 混合되어야만이 用途에 適合한 製品이 生産될 수 있다면 그 혼합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요량이 합리적인 原材料別所要量이 되는 것은 제품의 특성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配合되는 원재료의 配合比率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별로 等級을 달리하거나 거래되는 價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제품을 생산하는데 實際配合된 원재료의 比率에 맞는 소요량이 합리적인 原材料別所要量이 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업체에 따라 『접착제(Binder)』에 쓰인 原料의 混合比率이 Polyurethane Resin 68%, Nitro Cellulose 32%인 것을 特定原料 1가지만 소요된 것으로 發給하거나, 그 比率를 다르게 계산하는 事例가 있고, 『용제(Solvent)』에 쓰인 원료가 Toluene, Cyclohexanon 등 국산이 一定 比率 소요됨에도 수입된 Isopropyl Alcohol이나 M.E.K로만 소요된 것으로 발급되는 등 그 混合比率과 다르게 계산하여 發給되는 事例가 있다.

① 자동차용 『라지에타』에 Brass Strip 48%, Copper Strip 52% 사용한 것을 『55% : 45%』 比率로 計算, 發給한 事例

② 『자동차 튜브(Tube)』제조에 사용된 합성 고무 부분은 여러 종류의 고무류로 混合生産된다. 종류별 사용량으로는 『IIR : EPDM : 재생 Butyl』이 각각 『69.25 : 10.75 : 20』의 比率로

흐름도(세관 신청 기준)



混合使用하였음에도 그 비율을 79.43 : 13.75 : 6.82로 계산하여 混合比率을 실제와 다르게 계산한 事例

[참고자료] 還給書類 Check List 및 處理節次

(1) 還給申請의 適法性

- ① 還給申請機關의 適法與否 檢討
- ② 還給對象輸出 등 檢討
- ③ 還給權의 時效以內與否 檢討
- ④ 還給申請權者의 正當性 檢討
- ⑤ 還給方法 檢討
 - 輸出物品의 稅番分類
 - 業體別定額→簡易定額→概算 및 精算→個別

(2) 具備書類의 適正

- ① 具備書類의 眞否 檢討
 - 偽造 및 變造與否 檢討
 - 該當書類與否 檢討
- ② 具備書類의 要件充足 檢討
 - 具備書類 漏落與否 檢討
 - 輸出免狀上 名義와 輸入免狀 등 名義 檢討 (他人名義는 還給不可)
 - 要件具備된 所要量證明書與否 檢討(修正 및 追加記載에 留意)
 - 船積確認與否 檢討
 - 去來關係證明書類 檢討(證憑資料의 適法性 및 관련되는 書類與否)
 - 對替品輸出 및 第3國 委託加工輸出時 具備書類 檢討(還給對象의 輸入免狀 등 確認, 關聯證憑資料의 提出)
 - 輸入免狀 또는 輸出免狀 등의 重複還給與否 檢討

(3) 還給金額의 正確性確認

- ① 一括還給申請 檢討(輸出免狀別)
- ② (定額, 個別) 還給率適用의 正確性 檢討 (告示廢止 또는 改正 및 適用·停止에 注意)
- ③ 相計申請 및 概算還給金의 精算履行期間 檢討(加算金徵收對象 與否)
- ④ 所要原材料의 規格 및 所要量의 適正性與否 檢討
 - 外形上의 內容 檢討
 - 相計原材料 包含與否 檢討

- 告示, 非告示品目의 適用時點 確認과 改正 또는 廢止告示與否 檢討
- 當該製品의 規格 및 用途 등 特性에 맞는 所要原材料規格 該當與否 檢討(특히, 原材料 規格別 還給額 差異가 심한 경우) (對替性이 있는 原材料로 對替 使用되거나 混用되는 原材料에 대한 製品의 特性 및 規格變化 檢討로 所要原材料 種類 및 規格 確認)
- 製造, 加工의 工程段階에 一致하는 所要原材料의 종류, 규격을 確認(제조공법에 따라 소요원재료의 상태 확인) (基礎原材料와 中間原材料가 同時에 表現된 경우 重複還給되지 않도록 留意)
- 所要量計算方法의 正確性 檢討(告示上 所要量計算方法 留意) (농축비율 및 순도 등 含量比率에 의한 所要量計算方法 確認) (所要原材料의 單位換算方法 確認) (輸出品과 附屬品이 함께 輸出되면서 附屬品이 原狀態 또는 未組立狀態로 輸出된 때에는 損耗率 不認定)
- 單位實量의 確認: 輸出免狀 또는 소요량증명서에서 單位실량 과다표시 여부)
- 原資材別 混用比率 檢討(소요량 중복계산 및 사용원재료의 구성에 유의)
- 副產物表示의 漏落與否 檢討
- 假所要量證明書與否 檢討: 還給은 確定所要量으로만 可能
- ⑤ 輸出履行期間(時差) 및 期間制限對象 檢討
- ⑥ 免稅, 公賣, 還稅稅率等의 適用輸入與否 檢討(免稅條件 不履行으로 追徵된 경우 還給不可)
- ⑦ 原狀態 輸出與否 檢討: 國內에서 製造, 加工한 物品을 輸出하고 輸入原狀態輸出로의 偽裝與否
- ⑧ 赤字輸出與否 檢討: 赤字輸出原因이 偽裝輸出 또는 不當還給의 嫌疑가 있을때 審理依賴
- ⑨ 支給制限對象 原材料與否 檢討
- ⑩ 副產物 控除對象物品의 控除方法 確認
- ⑪ 對替品 輸出時 還給對象의 稅額決定에 留意 : 새로운 原材料로 製造, 加工하여 對替輸出된 경우 再輸入免狀으로 還給不可
- ⑫ 輸出入免狀 등과 所要量證明書上의 品名,

- 規格 등 內容의 一致與否 檢討
- ⑬ 還給金額의 正確한 算出 및 集計金額 確認
 - ⑭ 還給申請書式의 記載內容 確認
- (4) 還給處理 表示徹底
- ① 輸出入免狀 등 관련서류 원본에 還給表示 및 捺印
 - 分割記錄表의 還給表示, 특히 殘量表示 및 確認에 留意
 - 重複使用 確認徹底
 - ② 滯納確認과 措置
 - 滯納이 있는 경우에는 充當措置後 殘額還給
- (5) 還給金決定 및 支給
- ① 決裁된 還給申請書의 電算入力
 - ② 支給指示書 發給 및 支給銀行에 送付(稅關의 경우), 還給額支給報告書 作成提出(還給銀行의 경우)
- (6) 報告書 등 作成提出
- ① 還給金決定 및 支給報告書 作成報告(稅關長 → 關稅廳長 → 財務部長官)
 - ② 月別 還給金決算書 作成報告(稅關長 → 監査院長)
 - 還給申請人이 稅關에 納付할 체납금이 있을 때 充當措置한다.
 - 還給申請書上 支給받을 還給銀行名과 計座番號를 正確히 記載하여야 한다.
 - 還給決定日로부터 1년 이내에 支給要請을 하여야 한다.
 - 還給決定後 서류를 정리하였을 때에는 환급신청서, 소요량증명서 등과 같은 세관용은 반드시 원본을 보관하고, 수출입면장 등 업체용은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交付한다.
 - 과부족 환급시 추가징수 및 추가환급

區 分	措 置	關聯法規
不足還給	- 追加還給 認定範圍 ○ 計算錯誤 ○ 輸入免許時 稅率適用 錯誤 등으로 追徵된 稅額 ○ 所要量錯誤發給에 의한 所要量證明書 再發給 ○ 一括還給申請書의 意思表示된 原材料의 還給漏落 ○ 所要되는 原材料와 相異한 原材料添附 還給된 稅額追徵後 正當原材料 追加還給	- 令 제15조 제4항 단서 - 細則 제8-7조 제3항
過多還給	- 追加徵收...關稅法 제24조의 2 規定 準用 ○ 還給規定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할 金額을 超過하여 還給된 때 ○ 概算還給後 精算結果 超過還給된 때 ○ 概算還給後 期間內 精算申請하지 아니한 때 (還給銀行의 경우 稅關長에게 通知)	- 令 제26조 - 細則 9-7조
顯著히 不合理한 基準所要量의 精算	- 所要量調査結果에 의함. ○ 基準所要量이 過多策定된 경우 追加徵收 ○ 基準所要量이 過少策定된 경우 追加還給	- 令 제8조 제2항 - 細則 제4-4조

(大尾)